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표준급수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동안 기본요금체계 불합리와 구경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금회에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종량제 요금체계 도입하여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도급수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제1조)

○ 기존 수도법 규정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 및 공기업 운영의 적정관리를 도모

나. 급수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제6조)

○ 급수공사 승인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과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할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본요금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변경(제23조 별표1. 2)

○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조정
○ 계량기 구경별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변경

라.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제26조)

○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마. 연체금 및 체납액 독촉에 관한 사항(제29조)

○ 주민부담 해소와 체납액 조기납부 유도방안으로 체납액의 3/100⇒ 15/1,000로 조정
○ 체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추가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　　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사전규제(부패영향평가)검토 : 검토 필
마. 입법예고 : 2011.01.07.~1.28.(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바. 소비자정책심의회 개최여부 : 2010. 12. 29. 심의완료
사.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교육시설”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평창군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③급수구역 내에서 식수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면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 수

제16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

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2조(사용요금의 징수) ①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3조(사용요금) ①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2의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말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말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수도요금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

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제1항의 고지요금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합한 요금이 3,000원 이상이 되는 월에 고지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5,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6,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8,000원
4. 제27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기관 수수료
5. 제3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교육시설
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면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평창군상하수도사업

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 17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 34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

요율 / 업종	사용량 (톤)	사용요금(원)	비고
가정용	0～ 10	420	
	11 ~ 20	760	
	21 ~ 30	950	
	31～ 40	1,120	
	41～50	1,160	
	51이상	1,750	
업무용	0~ 20	1,070	
	21～ 50	1,530	
	51～100	1,910	
	101～300	2,200	
	301이상	2,350	
영업용	0～ 30	1,090	
	31～50	1,610	
	51～100	1,990	
	101이상	2,560	
욕탕용	0～ 200	1,620	
	201～300	2,120	
	301～500	2,510	
	501이상	3,390	
전용공업용		800	

〔별표 2〕 제23조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밀리미터)	금 액 (원)	비 고
계		
13	1,000	
20	2,000	
25	3,080	
32	3,680	
40	4,280	
50	6,860	
75	11,400	
100	17,400	
150	31,800	
200	47,700	
250	68,700	
300	74,400	
350	79,200	
400이상	86,400	

[별표 3]

업 종 구 분 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o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o 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 문방구 등의 소매점 ,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o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등
업 무 용	o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o 사설소화전 o 관공서, 학교, 병원, 빈점포, 새마을금고(신협포함), 농협,수협, 축협의 중안회 및 지사무소 o 국가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o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영 업 용	1. 식품접객업 2.공연장 3.숙박업(여인숙제외) 4.유기장, 노래방 5.백화 점, 도매센타, 대규소매점 6.자동차정비업,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또는 관광업 7.예식장 8.사설학원 9.사진현상소 10.양조업 11의약품.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12.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 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16.정육점 17.법령(의료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18.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19.금융업(보험. 신용금고. 증권사 포함) 20.전자제품판매(귀금속판매 포함) 21.도축장,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22.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23.창고업, 제재소, 화원(꽃집) 24.단란주점, 골프장 25.병원(의원포함) 26.이.미용업 27.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페인트류제조, 블록시멘트제조업) 28.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금업
욕탕용	o 일반목욕장업 o 특수목욕장업 o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o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과 태 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가지 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 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업종 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은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

제38조 (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전 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0.8.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법 】

제136조 (사용료)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22조 (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